

인터넷과 sns를 이용한 마약거래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

박 호 정*

요 약

인터넷과 sns를 이용한 일반인들의 마약거래가 급증하고 있어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일반인들의 마약수요를 억제하기 위하여 사전에 마약 관련 정보를 제공하여 마약범죄를 예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일반인들은 인터넷과 sns를 이용한 마약거래를 하더라도 적발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하여 인터넷과 sns를 이용한 마약거래를 하게 된다. 따라서 인터넷과 sns를 이용한 마약거래의 적발가능성이 높다고 일반인들이 인식하게 한다면 인터넷과 sns를 이용한 마약거래는 감소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통제배달기법규정의 구체화와 위장수사제도의 도입을 통해 인터넷과 sns를 이용한 마약거래의 적발가능성을 높인다면 일반인들이 쉽게 인터넷과 sns를 이용한 마약거래를 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본다. 이와 함께 마약범죄 처벌규정을 세분화하여 단순마약구매자에 대하여는 처벌보다는 치료위주의 처우를 통해 마약수요를 억제하고 마약공급자에 대한 처벌규정은 강화해야 한다. 마약류 대부분이 해외에서 밀반입되므로 외국에서 마약이 공급될 수 없도록 마약정보의 공유시스템을 구축하고 마약공급국가와 공조와 검색체계의 강화를 통해 인터넷과 sns를 이용하여 국내이용자가 해외에서 들여오는 마약공급을 사전에 차단해야 할 필요가 있다.

A Study on Drug trading countermeasures via internet and sns

Park Ho Jeong*

Abstract

The drug trade among the general public via the Internet and sns have been increasing, which is becoming a social problem. The general public believe that even if they do the drug trade via the Internet and sns the probability of detection is low. so they will conduct drug trade via the Internet and sns. Therefore, if the general public recognize that there is a high likelihood of disclosure, drug trade via the Internet and sns are likely to decline. If the possibility of punishment increases through specification of controlled delivery techniques and Introduction of entrapment investigator, it seems that the general public can not easily deal with drug trade via the Internet and sns. Also by further subdividing the penalties for drug offenses, for simple drug buyers through cure-oriented treatment rather than punishment drug demand be suppressed and penalties for drug suppliers should be strengthened.

key words: drug trade, Internet, sns, entrapment investigator, controlled delivery techniques

접수일(2018년 2월 28일), 수정일(2018년 3월 23일)

* 건양대학교 국방경찰행정학부 교수

게재확정일(2018년 3월 30일)

I. 서론

최근 일반인들이 인터넷과 sns를 통하여 마약에 대한 정보를 쉽게 접근할 수 있게 되면서 인터넷과 sns를 이용한 마약거래가 급증하고 사회문제화 되고 있다. 마약은 중독성이 있어서 그 자체로도 위험하지만, 마약투약에 따른 환각상태 하에서 살인·강도·방화 등 2차 강력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높고, 마약구입자금 마련을 위해 강도·절도 등의 재산범죄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사회안전에 심각한 위협요인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인터넷과 sns가 마약의 주요한 거래창구로 사용되면서 인터넷과 sns를 이용한 마약거래사범은 빠른 속도로 증가하여 마약사범은 2016년에 1만명을 넘어섰고 청소년마약사범도 급증하고 있는 추세이다.

검찰과 경찰은 마약합동수사반을 편성하여 인터넷과 sns를 이용한 마약거래를 단속하고 있고, 마약인터넷 모니터링 시스템을 도입하여 불법마약사이트를 차단하고 수집한 증거를 통해 추적수사를 실시하고 있다. 또한 마약류 판매 등 광고에 대한 처벌규정을 신설하여 인터넷과 sns를 통한 마약류 거래의 시도를 막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6년에는 오히려 마약류 사범이 1만명이 넘게 단속되어 증가하였는데 마약을 모르는 일반인들이 인터넷과 sns를 통해 국내외 마약판매자와 쉽게 연락할 수 있게 되어 마약을 거래할 수 있게 된 점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왜냐하면 일반인들은 호기심에서 인터넷과 sns를 통하여 마약사범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인터넷과 sns를 이용한 마약거래를 억제하기 위하여 인터넷상 마약광고를 하면 처벌하는 규정을 도입하고 검찰과 경찰의 강력한 단속에도 불구하고 마약사범은 계속 증가하고 있다. 마약범죄는 피해자가 없기 때문에 신고가 없고 수사기관의 노력이 없다면 범죄의 적발이 어려워 대부분 암수범죄가 된다. 특히 인터넷과 sns를 이용한 마약거래는 현실공간이 아닌 사이버공간에서 은밀하게 이루어져서 익명성이 보장되고 직접 접촉하지도 않고 거래가 가능해서 더욱 적발이 어렵다.

따라서 사이버공간에서의 마약수요를 억제하는 정책

을 마련해서 인터넷과 sns를 통해 확산되는 마약거래를 방지한다면 마약공급도 자연스럽게 감소할 수 있으므로 인터넷과 sns를 통해 급격하게 확산되는 마약수요를 억제하는 정책을 연구해야할 필요성이 있다.

인터넷과 sns를 통해 확산되는 마약거래는 마약중독자를 양산하고 사회적인 혼란을 야기하여 사회전체에 막대한 피해를 가져온다. 따라서 인터넷과 sns를 이용한 마약거래에 대한 효율적인 대응방안의 마련이 요청된다고 할 것이다. 인터넷과 sns를 이용한 마약거래의 최근 실태와 검거한 사례를 통하여 사회에 널리 만연하고 있는 인터넷과 sns를 이용한 마약거래의 실태를 분석하고, 인터넷과 sns를 이용한 마약거래에 대한 현행 대응제도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그에 따른 개선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인터넷과 sns를 이용한 마약거래를 방지함으로써 선량한 대다수 국민의 피해를 줄이는데 목적이 있다고 할 것이다.

2. 인터넷과 sns를 이용한 마약거래현황과 대응현황

2.1. 인터넷과 sns를 이용한 마약거래현황

마약류는 일반적으로 느낌, 생각 또는 행태에 변화를 줄 목적으로 섭취하여 정신에 영향을 주는 물질을 말하며, 협의로는 오남용의 방지를 목적으로 그 생산·판매·사용이 통제되는 약물을 지칭하고, 법률적으로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정의된 마약·향정신성의약품·대마를 일컬어 말한다. 마약사범은 2002년에 강력한 단속을 통한 마약류 공급선 차단을 통해 감소되었고, 2014년까지 1만명선 아래로 억제되었으나, 2015년도 11,916명이 적발되었고, 2016년에는 14,216명으로 크게 증가하였다. 증가원인은 인터넷과 sns를 이용한 마약거래가 확산됨으로써 특정한 마약사용계층이 일반인으로 확산된 것으로 보인다.[1]

실제로 인터넷과 sns를 이용한 마약류 사범은 최근 5년간 급증하고 있다. 2012년 86명, 2013년 459명, 2014년 800명, 2015년 969명, 2016년 1120명, 2017년 상반기 721명 이었다.[2] 마약류 사범은 향정신성의약품

이 2015년 80.7%, 2016년 80.2%를 차지하고 있어서 주종마약류(특히, 메트암페타민)임을 보여주고 있다.[3] 행위별로 마약류사범을 살펴보면 투약사범이 51.6%, 밀매 25.7%로 투약사범과 밀매가 주류를 이루고 있다.[4]

50대 국가에 거주하는 10만명 이상의 인터넷사용자가 참여한 전세계 설문조사에 따르면 마약류남용자가 인터넷을 통해 마약류를 구입하는 비율은 2014년부터 2017년간 약 70%증가하였고, 그 중 다크넷을 이용한 마약류 구입건수는 2013년 210만건에서 2015년 240만건으로 증가하였다.[5]

법무부가 제출한 ‘최근 5년간 마약류사범현황’자료에 따르면 미성년자(10-19세) 마약사범이 총 531명으로 지난 2012년 38명에서 2015년 121명으로 3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6] 마약류공급사범은 2016년 4036명으로 2015년 대비 24.7%가 늘어났으며, 대부분 채팅앱이나 판매사이트를 통해 판매 및 투약자물색이 이뤄졌다. 국내에서 마약류를 만들다 적발된 사례는 미수에 그친 사건을 포함해 2건에 그쳐, 유통되는 마약류대부분이 해외에서 밀반입된 것으로 나타났다.[7] 경찰청에 따르면 2017년 1월부터 10월까지 총 8023명의 마약사범이 검거됐으며 이중 온라인을 이용한 마약사범은 772명으로 집계됐다. 2016년도 7622명, 온라인 마약사범 705명에 비해 늘어난 것이다. 그러나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 시행 이후인 지난 2017년 6월부터 10월까지 검거된 마약사범은 4113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4171명에 비해 오히려 감소하였다. 온라인 마약사범도 418명으로 2016년도 572명에 비해 감소하였다.[8] 인터넷과 sns를 이용한 마약거래는 점점 증가되고 있고 마약거래의 특징이 조직화되고 전문화되고 사이버화 되어가는 경향이 분명해졌음에도 이에 대한 단속은 오히려 감소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2. 인터넷과 sns를 이용한 마약거래에 대한 대응현황

2.1.1 인터넷과 sns를 이용한 마약광고 추적

증가하고 있는 인터넷과 sns를 이용한 마약거래에 대응하여 검찰은 2016년부터 일반적인 인터넷에서 거래되는 마약거래에 대한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을

개발하여 인터넷 마약류 범죄 모니터링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이 시스템은 관련검색어가 올라오면 자동 추적하는 방식이다.

인터넷이나 sns를 이용한 마약류 판매광고를 처벌함으로써 마약거래를 감소시키기 위해 인터넷이나 sns를 이용하여 불법적으로 마약류판매를 광고하거나 제조방법을 게시하는 행위가 적발되면 해당게시물을 삭제·차단하고 행위자를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2017년 6월 3일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2호와 제62조 제1항 제3호를 개정하였다.

2016년 4월에 검경마약수사 합동수사반을 전국 14개 지역에 설치하여 인터넷·sns를 이용한 마약류 제조 및 판매사범을 중점 단속하고 있다. 인터넷 모니터링 전담수사관 배치하여 인터넷과 sns를 통해 이루어지는 마약거래를 추적하고 있다.

2.2.2 통제배달기법

금제품이 비금제품을 가장한 탁송화물 속에 은닉된 채, 점유자 없이, 세관 통관절차를 밟는 도중 세관당국에 발각되었을 때 당국이 금제품을 즉시 압수·폐기하지 아니하고 세관당국과 수사기 관이 긴밀히 협조하여 그 금제품이 밀수출입업자·유통업자의 손에 유출되지 못하도록 충분한 감시 체제를 가동 하면서, 탁송화물이 발송계약상의 경로를 밟아 밀수출입업자·그 공범에게 배송 되도록 추적하다가 밀수출입업자·그 공범이 확실히 드러나면 체포하여 관련자 들을 일망타진하고 최대한의 금제품을 압수하려는 세관당국·수사당국의 협력수사기법이다.[9]

통제배달은 당국이 금제품의 존재를 발견하였지만 이를 즉시 압수·폐기하지 않고 탁송화물을 다시 원상태로 회복시킨 다음 감시체제를 가동하면서 탁송화물이 탁송자의 의도대로 발송계약상의 경로를 밟아 최종수취인(밀수출입업자·혹은 그 공범)에게 배송될 때까지 은밀히 추적하는 ‘라이브 컨트롤드 딜리버리(live controlled delivery)’(이하 ‘LCD’로 약칭함)와 수사기 관이 금제품을 탁송인이나 수취인 모르게 무해물질로 대체한 상태에서 금제품이 발각되지 않은 것처럼 가장하면서 최종수취인에게 배송될 때까지 추적하는 ‘클린 컨트롤드 딜리버리(clean controlled delivery)’(이하

‘CCD’로 약칭함)의 두 가지 패턴이 있다.[10] 통제배달은 이미 수행 중에 있는 범죄의 진행과정을 감시하여 가장 효과적인 시기에 범인을 검거하는 전략이고, 범인에게 기회를 제공하거나 범의를 유발하는 요소를 포함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위법성이 문제되는 합정수사와 구별된다.[11]

2.2.3 처벌범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은 제58조 1항에서 ‘마약을 제조나 판매 등의 목적으로 취급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규정하고 있고, 동조 2항에서는 영리를 목적으로 마약의 제조 등의 행위를 상습적으로 한 자는 사형·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동조 4항에서는 ‘예비·음모죄의 경우에도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제59조에서 ‘그와 유사한 행위 등에 대하여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64조는 ‘마약류취급에 잘못이 있는 이에게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제9조에서 ‘마약류로 인식하고 수입하거나 수출한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마약류로 인식하고 양도·양수하거나 소지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인터넷과 sns를 이용한 마약거래 사례

3.1. ‘딥웹’에 판매한 일당 적발

3.1.1 개요

부산 도심 상가에서 대마를 재배해 ‘암흑의 인터넷’으로 불리는 ‘딥웹’에서 판매한 일당이 검찰에 적발됐다. 딥웹을 이용한 마약 거래를 적발한 국내 첫 사례다. 부산 지역 고교 동창생, 친구 사이인 이들은 딥웹의 A사이트에서 대마를 구입해 함께 흡연했다. 딥웹은 구글, 네이버 등 일반 검색엔진으로 접속이 불가능한 암호화된 웹페이지를 말한다. 마약 등 각종 불법거래의 온라인 암시장으로 악용돼 ‘다크넷(Darknet)’으

로도 불린다. 이들은 2016년 6월 부산의 한 상가 사무실 5층에 대마 재배 시설을 설치했다. 아래층에 학원과 오토바이 가게 등 평범한 업체들이 입주해 있어 의심을 피하기 쉬웠다. 사무실 안엔 이중 커튼과 철문을 설치하고 환기구가 옥상으로 통하도록 개조하는 등 철저하게 주변의 눈을 피했다. 벽면을 모두 은박 단열재로 차단하고 조명, 환기, 온도 조절 시설까지 갖춘 뒤 약 1년 2개월 동안 30그루의 대마를 재배했다. 재배한 대마는 딥웹에서 광고한 뒤 판매했다.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거래는 가상 화폐인 ‘비트코인’으로만 했고, 구매자가 비트코인을 입금하면 미리 대마를 숨겨 둔 장소를 알려주는 속칭 ‘던지기’ 식으로 거래했다. [12]

3.1.2 분석

대마를 재배하면서 수사기관이 검색할 수 없는 딥웹을 이용하여 마약광고를 하고 이를 보고 연락을 한 일반인과 인터넷을 이용하여 거래를 하면서 비트코인으로 결제를 하고 던지기 수법으로 비대면거래를 하다 적발된 사건이다.

3.2. sns를 이용한 일반인의 마약범죄

3.2.1. 개요

국내 명문대 재학 중에 국비 유학생으로 선발돼 2009년부터 일본의 한 대학에서 공부하던 모범생인 윤모(28)씨는 대마 및 LSD, MDMA(일명 엑스터시) 등을 구입하고 대마를 판매한 혐의로 지난해 징역 2년6개월을 선고 받았다. 그는 다른 마약류 사범들과 마찬가지로 구글 네이버 등 일반 검색엔진이 아닌 특정 브라우저로만 접속할 수 있는 인터넷 공간 ‘딥 웹(Deep Web)’ 사이트에서 가상화폐 비트코인으로 마약류를 사고 판 것으로 조사됐다. 초보이지만 전과자나 다름 없는 수법을 사용한 것이다.[13]

3.2.2. 분석

평범한 일반인이 인터넷을 통하여 딥웹을 발견하고 비트코인을 이용하여 마약을 구입한 다음 다시 이를 딥웹을 이용하여 판매하다 적발된 사건이다.

3.3. 스마트폰 채팅앱 통해 필로폰 거래

3.3.1. 개요

ㄱ씨(38) 등 2명은 지난 2월부터 3개월간 스마트폰 채팅앱에 “필로폰을 판매한다”는 글을 올린 뒤,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투자자 24명에게 필로폰 약 40g(시가 1억3000만 원 상당)을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ㄱ씨 등은 대포통장으로 돈을 송금받은 후 고속도로 휴게소 게입기나 공중전화, 도로표지판, 공중화장실 등지에 필로폰을 숨겨 놓고 구매자가 찾아가도록 하는 수법(일명 ‘던지기’)으로 유통한 것으로 드러났다.[14]

3.3.2. 분석

스마트폰 채팅앱을 이용하여 필로폰을 판매한다는 마약광고를 한 다음 연락이 온 일반인에게 대포통장으로 송금받은 후 마약을 던지기 수법으로 비대면 거래를 한 사건이다.

4. 인터넷과 sns를 통한 마약거래에 대한 현재 대응의 문제점

4.1. 마약범죄모니터링 시스템의 문제

마약범죄모니터링 시스템은 검색어를 가지고 추적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인터넷 포털검색에 노출되지 않는 영역에 대한 감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다는 문제가 있다. 마약범죄의 패러다임도 변했다. 마약거래는 과거 대포통장이나 차명계좌를 통해 거래했던 방식에서 탈피한지 오래다. 추적이 어려운 딥웹(deep web)으로 주요활동 무대를 옮겨가고 있다. 딥웹은 네이버나 구글처럼 일반 포털사이트에서 검색되지 않는 온라인 공간을 말한다. 별도로 암호화된 네트워크에 존재하기 때문에 특정한 인터넷 브라우저를 통해서만 접속이 가능하다. 딥웹을 사용하면 컴퓨터 주소인 IP를 숨겨준다. 이는 마약구매의 주 거래수단으로 사용하는 비트코인 거래 추적을 거의 불가능하게 만든다. 그동안 딥웹은 소수의 인터넷 유저들만 아는 비밀 장소였다. 하지만 입소문을 타고 인터넷 등을 통한 마약거래가 활성화되면서 한국도 딥웹을 통한 마약의 유통에 빠지기 시작했다는 게 수사기관의 분석이다.[15] 딥웹이라 불리는 영역에서 마약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딥웹 마약거래사이트는 컴퓨터 주소인 IP를 여

러번 우회해서 검색이 안되기 때문에 통제가 어렵다. 또한 채팅앱은 대부분 본인인증 절차 없이 가입할 수가 있는데 마약을 암시하는 검색어를 제한하는 곳도 없고 상대방이 채팅방을 나가면 대화내용이 모두 사라지기 때문에 증거를 남기지 않아 단속에 어려움이 있다.

4.2. 복잡한 수사체계의 문제

우리나라는 경찰청, 검찰청, 관세청, 해양경찰청 등 여러 개의 수사기관들이 마약수사를 개별적으로 수행하고 있어 여러 수사기관의 실질적인 협조는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 따라서 현재 인터넷과 sns를 이용한 마약거래를 단속하기 위한 검찰과 경찰 그리고 관세청의 공조수사는 어려운 실정이다. 마약관련 수사는 전국적인 조직망에 의한 연계수사로 인하여 수사관할이 없기 때문에 다른 수사기관과 실적경쟁을 하거나 책임을 떠넘기려는 경향이 있어서 공조수사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기 어렵기 때문이다. 인터넷과 sns를 이용한 마약거래에서 유통되는 마약은 대부분 외국에서 생산되고 국제범죄조직이 관여하는 경우가 많아서 마약공급국가와 협력하는 일원화된 수사기관이 필요한데 현재의 복잡한 수사기관의 구성은 이를 어렵게 한다는 문제점이 있다.

4.3. 합정수사의 한계

현실의 공간과 달리 사이버공간의 특수성은 단순히 범행 장소에 잠입하여 접촉을 시도하거나 직접 보고 듣는 일상의 유형적 활동과는 다른 특징을 지닌다. 따라서 기존의 일반적이고 사후적인 수사 방법만으로는 사이버 공간의 범죄에 대한 접근이 어렵고, 이러한 방법만을 계속 고집한다면 범죄를 포착하거나 인지하는데 있어 한계점에 봉착하기 쉽게 된다.[16] 과거에는 국내에서 마약을 제조했기 때문에 국내의 정보만으로도 수사가 이루어졌으나, 인터넷과 sns 등의 통신 및 국제특송 등 배송의 발달로 인해 국제적으로 소량거래를 손쉽게 할 수 있게 되었다. 이에 따라 외국에 있는 마약공급사범이 인터넷이나 sns를 통해 주문을 받고 국제우편이나 택배를 통하여 마약을 배달할 수 있게 되면서 전통적인 합정수사를 통해 마약공급사범을 추적 검거하는 것이 어렵게 되고 있다.[17]

4.4. 분리된 국경안보체계의 문제점

개별기관별로 업무를 나누어 국경관리를 담당하는 분산된 관리체계에서는 공항, 항만, 육로 국경에서 발생하는 밀수입, 마약 밀거래 등 다양하고 복잡한 국경위협에 통합적으로 대응하기 어렵다[18]

세관과 출입국관리소의 검색시스템은 허술하게 이루어져서, 인터넷이나 sns를 통해 주문한 마약을 은밀화 되고 지능화된 마약류 유통수법을 통하여 국제 마약공급조직에 의한 신종마약류의 밀반입이 증가하고 있다.

4.5. 일반인의 마약관련 정보 부족

신종마약들이 증가하고 있으나 일반인들은 마약관련 정보가 없거나 부족하여 합법적인 마약으로 이해하여 인터넷과 sns에 올라온 정보를 통해 마약을 구입하는 사례가 발생하게 된다. 신종마약들은 대부분 임시마약류로 지정되고 있으나,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지 않고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인터넷과 sns를 이용해 마약거래를 하는 경우가 많다.

4.6. 마약판매 처벌의 실효성부족

SNS에서 아이스, 작대기, 얼음, 크리스탈과 같은 마약을 뜻하는 은어에 해당하는 용어를 검색하면 마약을 판매한다는 광고를 쉽게 발견할 수 있다. 2017년도에 개정된 마약류관리법에 따르면 마약판매 광고를 하면 처벌이 가능하도록 개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온라인 공간에서 인터넷과 sns를 이용한 마약거래는 여전히 계속 이루어지고 있다. 마약 판매 광고만 해도 처벌이 가능하도록 법이 개정됐었으나 인터넷과 sns를 이용한 마약거래에 대한 단속이 용이하지 않아 눈에 띄는 변화는 나타나지 않는 것이다.

4.7. 관련법의 미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과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은 행위태양에 따라 처벌규정이 달리 적용되는 입법형식으로 규정되어 있다. 행위태양이 동일한 경우 마약의 종류나 거래량에 관계없이 동일한 처벌규정이 적용될 수밖에 없어서 사안별로 세분화된 처벌이 어렵고 이에 따라 처벌의 일관성에 문제가 있을 수가 있다.

4.8. 인터넷 마약판매의 진화에 따른 대처의 어려움

최근 인터넷을 이용한 마약거래가 증가하고 있으나, 실제 거래는 비밀리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추적과 검거가 곤란한 경우가 많다. 마약거래는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를 통해 대금을 지급하고, 직접 만나서 하기 보다는 특정한 장소에 마약을 두고 가면 구입자가 찾아서 가져가는 방식이기 때문에 대면하지 않고서도 마약을 구입할 수 있기 때문이다.

4.9. 통제배달기법 규정의 미비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제4조는 '세관장은 관세법 제246조에 따라 화물을 검사할 때에 화물에 마약류가 감추어져 있다고 밝혀지거나 그러한 의심이 드는 경우, 그 마약류의 분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충분한 감시체제가 확보되어 있는 마약류범죄의 수사에 관하여 그 마약류가 외국으로 반출되거나 대한민국으로 반입될 필요가 있다는 검사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세관장은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통제 배달의 전제가 되는 해당마약류를 수사기관이 확보하게 함으로써 간접적으로 통제배달 수사기법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19]

현행법은 통제배달에 대하여 겨우 두 군데(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4조)에서 아주 가볍게, 아주 우회적으로 언급하는 정도의 조문을 두고 있을 뿐이고, 그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한 신뢰할만한 해설이나 해석의 거점조차도 존재하지 않는다.[20] 현행법은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제3조와 4조에서 통제배달기법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자세한 내용을 적시하지 않아 구체적인 사례에 적용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5. 인터넷과 sns를 이용한 마약거래 대응방안

5.1. 전담조직구성

검찰·경찰과 관세청의 공조수사가 요구된다. 또한 외국에서 인터넷과 sns를 이용하여 마약을 공급하는 공급자를 검거할 수 있도록 주요 마약 수출국의 마약

단속부서와 공조수사를 강화하여야 한다. 마약공급이 대부분 해외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해외공급자를 추적하여 검거할 수 있도록 국제공조수사가 요구된다. 이를 위해서 각 기관이 가지고 있는 마약정보를 통합하여 마약정보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단일한 마약 관련 부서를 신설할 필요가 있다.

5.2. 국제공조수사 강화

마약류 사범은 거래하는 조직원이 검거된 사실을 알게되면 즉시 도피하기 때문에 국가간 공조체제가 이루어져서 조직원간 검거사실을 알기 전에 검거한 나라에서 해당국으로 통보해서 검거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범죄인 인도조약이나 형사사범공조조약 등을 체결하여 국제형사사법공조를 강화하여 마약공급가능성이 높은 국가와 공조체제를 구축하고 양국 수사기관의 협력을 통하여 신속한 정보교류를 하여야 한다. 그리고 유엔을 중심으로 운영되는 국제사회의 마약규제를 위한 노력에 동참하여 인터폴을 통한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

5.3. 배달통제기법 규정의 구체화

통제배달기법의 수사상 활용에 대한 법적 근거는 있지만, 국제적 마약조직의 개입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통제된 수입의 경우 말고도 우리나라를 마약거래의 중계지로 활용하는 경우와 우리나라에서 수출되는 경우를 고려하여 규정을 보완하여야 한다.[21] 향후에 관세법, 출입국관리법, 마약류 특별법에 적절성과 상당성이 구비된 통제배달을 좀 더 상세하고 명시적으로 삽입하는 입법적 조치가 수반될 필요가 있다. 현재는 하위 법령에 근거규정을 둔 상태지만 이를 법률에 명시할 필요가 있다.[22] 이를 통하여 인터넷과 sns를 이용하여 마약을 구매하려는 일반인의 시도를 통제하여야 한다.

5.4. 위장수사제도의 도입

인터넷과 sns를 이용한 마약거래는 거래상대방을 상대로 신분인증절차를 거치기 때문에 단속하는 수사관에게 위장수사를 통해 의심받지 않도록 정교하게 접근할 수 있는 수사기법이 필요하다. 위장수사는 신분을 위장한 수사관을 범죄조직에 은밀히 잠입시키거

나 범죄조직원을 정보원으로 삼아 범죄정보를 파악하고 이용하여 범인을 검거하는 수사기법이라고 할 수 있다.[23] 위장수사에는 i) 수사관이 위장을 하고 일정한 장소나 주거에 들어가서 수사하는 범죄사실 인지를 위한 위장수사 ii) 예비·음모 단계에서 범인을 파악하여 그를 체포하기 위해서 범죄조직에 잠입하는 범죄예방을 위한 위장수사 iii) 범죄 실행을 유인하는 위장수사로 나뉘어진다.[24]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마약범죄에 대한 증거수집을 목적으로 한 위장수사와 관련한 법적근거가 아직 우리나라에는 없다.

독일 형사소송법 제110조a 및 제110조b는 마약 또는 무기거래, 통화 및 유가증권의 위조 등의 일정한 중대 범죄에 대하여 그 범죄가 행하여졌다는 충분한 사실적 근거가 존재하는 경우 및 특정사실에 의거할 때 제법의 위험이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원칙적으로 검사의 동의를 얻어 위장수사관을 투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25] 위장수사는 마약범죄와 같은 증거를 수집하기 어려운 범죄를 대상으로 예외적으로 기간을 규정하고 엄격한 보충성원칙 하에서 제한적으로 허용되어야 한다. i)과 ii)의 위장수사방법으로서 위장수사관이 특별히 범죄를 범하거나 조장하는 것이 아닌 경우는 입법을 통해 허용되어도 무방하다.[26]

개인 간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마약거래는 증거수집이 어렵기 때문에, 위장수사의 도입은 인터넷과 sns를 이용해서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마약거래에 대한 적발가능성을 높여서 일반인들의 마약수요를 감소시킬 수 있다. 형사소송법을 개정하여 위장수사를 도입하면서 위장수사의 대상범죄를 엄격히 제한하고 절차와 요건의 근거규정을 구체적으로 마련하여 위장수사의 남용가능성을 예방하여야 한다.

5.5. 딥웹에 대한 감시체계 강화

딥웹등 숨어 있는 사이트를 모니터링하는데는 한계가 있어 딥웹에 대한 연구를 통하여 딥웹에 존재하는 마약거래 정보에 대한 자동검색시스템을 구축하여 딥웹에서의 마약거래에 관한 감시체계를 강화해야 한다.

5.6. 마약정보의 공유시스템 구축

마약류범죄는 상습적이고 반복적인 특성을 가지므로 검찰·경찰·세관·국정원 등 수사기관이 가지고 있는

자료와 외국수사기관의 자료를 활용하여 마약사범을 추적하고 검거하는 사례가 많다. 따라서 마약류 유통과 관련된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수사기관들끼리 공유하는 시스템을 갖추어 활용하는 방안이 요청된다.

5.7. 처벌범위 강화와 세부화

중국의 마약범죄는 중화인민공화국 형법 제7장에 의해 규제되고 있다.[27] 메스암페타민(필로폰) 또는 헤로인 50g 이상, 아편 1kg 이상, 그 외의 마약을 다량 밀수·판매·운반·제조할 경우 15년 이상 징역 또는 사형에 처하고, 재산을 몰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필로폰 10g-50g, 아편 200g-1kg 밀수·판매·운반·제조할 경우는 7년 이상의 징역 및 벌금형을, 필로폰 10g 미만, 아편 200g미만 또는 소량의 마약을 밀수·판매·운반·제조할 경우 3년이하 징역 및 벌금형을 각각 규정하고 있다. 또한 마약법에 의해 마약류 투약을 금지하여 치안관리처벌법에 의해 재배·운반·휴대·보관·매매·흡입·제공·단속정황전달 등 처벌규정을 세분화하고 있다.[28]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과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별법의 처벌규정을 행위유형과 함께 마약종류와 거래량에 따라 처벌법규를 달리하고 세분화를 통하여 처벌을 강화하여야 한다.

5.8. 마약수요억제를 위한 홍보

일반인에게 신종마약 정보와 인터넷거래의 처벌에 대하여 널리 홍보하고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인터넷과 sns를 이용하여 무분별하게 이루어지는 마약거래를 사전에 예방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종마약에 대한 정보를 대중에게 공개적으로 알리고, 마약류 사용의 위험성에 대해 널리 홍보하는 것이 마약범죄를 예방하는 중요한 수단이 될 수 있다.

5.9. 분산된 국경관리체계의 통합

미국의 관세국경관리청(CBP), 캐나다 국경보안청(CBSA), 호주이민국보호호부(DIBP)와 유사한 CIQ 단일책임기관을 한국의 실정에 맞게 벤치마킹하여 관세청과 출입국관리소 등을 포함하여 새로운 통합국경안보조직(가칭 국경안보처)을 신설하여 국경관리체계를 통합하여 운영한다면 외국에서 들어오는 마약 밀수에

대한 통합대응이 가능하다.[29]

5.10 검색체계 강화

마약의 출입통로인 선박이 출입하는 항구나 출입국 장소에 대한 과학적 마약검색체계를 구축하여 해외로부터 몰래 들어오는 마약류공급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마약탐지견 외에 마약탐지기 보급을 통하여 마약류 밀수에 사용되는 특송화물, 국제특급우편 수송경로의 감시와 통관검사를 강화하여야 한다. 또한 항공화물·우편물 등의 통과 지역에서 통관절차에 반수사권이 있는 마약수사관들이 참여하여 관세청의 전문성을 습득하고 통관현장에서 통제배달기법을 할 것인지 위장수사를 할 것인지 결정할 수 있도록 한다면 인터넷과 sns를 이용한 마약구입자가 택배, 우편물배달을 이용할 때 심리적 압박을 통해 통제를 강화할 수가 있다.

6. 결 론

인터넷과 sns를 통한 마약거래가 이루어지면서 일반인의 마약범죄가 급증하고 있다. 마약은 그자체로도 위험하지만 환각상태 하에서 2차 범죄의 요인이 되기 때문에 사회안전에 크나큰 해악이 될 수가 있다. 마약 중독자에 대해서는 마약사용습관을 없애기 위한 치료가 필요하지만, 마약을 경험하지 못한 일반인들에게는 마약사용을 저지하게 하여 마약수요를 억제하는 것이 마약통제에 효과적인 수단일 것이다. 따라서 인터넷과 sns를 이용한 마약거래를 방지할 수 있다면 급증하고 있는 마약사범을 억제하고 이에 따른 2차 범죄를 예방함으로써 사회안전에 많은 기여를 할 수 있다고 본다. 마약류 공급사범에 대해서는 강력한 처벌을 통한 억제책이 필요하지만 마약류 수요자는 제재보다는 홍보를 통한 사전예방이 중요하고, 중독에서 벗어날 수 있는 치료위주의 대책이 요구 된다

우리나라에서 마약이 만들어지는 것은 극소수에 그치고 인터넷과 sns를 이용하여 외국에서 우편배달이나 택배의 형태로 마약이 공급되어지고 있고, 이렇게 수입한 마약을 다시 국내에서 인터넷과 sns를 이용하여 판매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 일반인들의 마약

에 대한 수요를 억제하기 위하여 마약의 위험성과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여 사전에 마약범죄를 예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마약공급국가와 공조하여 해외에서 들어오는 마약공급을 사전에 차단해야 할 필요가 있고 외국에서 마약이 공급될 수 없도록 검색체계를 강화하고 마약정보의 공유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한다. 또한 인터넷에 게재되는 마약광고를 처벌하는 규정이 존재하더라도 실제 처벌되는 숫자가 적기 때문에 일반인들은 주저하지 않고 인터넷과 sns를 통해 마약거래를 하게 되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인터넷과 sns를 통해 마약거래를 하게 되면 처벌될 가능성이 높다고 인식하게 한다면 인터넷과 sns를 통해 마약거래는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이를 위해 인터넷과 sns를 통해 마약거래의 처벌가능성을 높일 수 있도록 통제배달기법의 활용과 독일에서 실시되고 있는 잠입수사 규정을 신설하여 인터넷과 sns를 통한 마약거래에 적극적으로 활용한다면 일반인들이 손쉽게 인터넷과 sns를 통한 마약거래를 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마약범죄 처벌규정을 보다 세분화하여 단순마약구매자에 대하여 처벌보다는 치료우주의 처우를 통하여 계속될 수 있는 마약수요를 억제해야 하고 마약공급자에 대한 처벌규정을 강화해야 한다.

인터넷과 sns를 이용하여 주문을 하더라도 외국에서 마약이 공급되지 않도록 현재 분리되어 운용되고 있는 세관과 출입국관리소를 통합하여 통관절차를 강화하고, 인터넷과 sns를 통해 마약거래를 할 때 적발가능성을 높여서 일반인들로 하여금 인터넷과 sns를 통한 마약거래를 시도하지 않도록 한다면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인터넷과 sns를 이용한 마약거래의 억제가 가능하다고 본다.

참고문헌

- [1] 관세청, 2016년도 마약류밀수동향, p.28, 2017.
- [2] 마약구입 인터넷·sns로 확산.. 최근 5년간 지속증가, 뉴시스, 2017.7.17.
- [3] 관세청, 2016년도 마약류밀수동향, p.28, 2017.
- [4] 관세청, 2016년도 마약류밀수동향, p.29, 2017.
- [5] 검찰청, 마약류 범죄백서 2016, p.34, 2017.
- [6] 비트코인이 역풍맞은 이유? 마약거래 춤추게 하는 화폐, 아주경제, 2017.12.27
- [7] 지난해 마약사범 '역대 최다'...sns·인터넷 거래급증, 한겨레, 2017.9.4
- [8] SNS에 '아이스' '작대기'... 범망 비웃는 마약광고, 파이낸셜 뉴스, 2017.12.2
- [9] 이경렬, 국제조직범죄에 대한 통제배달기법의 활용: 특히 국제마약사범을 중심으로, 247면. 형사정책연구 57권 제1호, 2004.
- [10] 심의기, 세관직원의 국제우편물 개봉·시료채취와 수사기관의 통제배달, p.51, 비교형사법 연구 제16권, 제2호, 2014. 12.
- [11] 이경렬, 국제조직범죄에 대한 통제배달기법의 활용: 특히 국제마약사범을 중심으로, p. 249. 형사정책연구 57권 제1호, 2004.
- [12] 도심서 대마 재배...비트코인 받고 '딤웹'에 판매한 일당 적발, 중앙일보, 2017.9.11
- [13] 마약 청정국가라면서... 커피숍·거리에서도 약물 거래, 한국일보, 2018.1.17
- [14] 스마트폰 채팅앱 통해 필로폰 거래까지...경북경찰청 마약사범 26명 검거, 경향신문, 2017.6.14.
- [15] 비트코인이 역풍맞은 이유? 마약거래 춤추게 하는 화폐, 아주경제, 2017.12.27.
- [16] 박근숙, 사이버공간에서 합정수사 기법에 관한 연구, p.19,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6.
- [17] 예상균, 마약수사에서 합정수사기법 고찰, 한양법학 제28권 제4집, p. 245, 한양법학회, 2017.11.
- [18] 윤태영, 초국가적 위협 및 테러리즘 증가와 통합국경안보체계 구축:미국, 캐나다, 호주를 중심으로, 융합보안 논문지 제17권 제4호, p.76, 한국융합보안학회, 2017.10.
- [19] 예상균, 마약수사에서 통제배달기법고찰, p.6 법과정제연구제15집제2호, 한국정책학회, 2015. 6.
- [20] 심의기, 세관직원의 국제우편물 개봉·시료채취와 수사기관의 통제배달, p.66, 비교형사법 연구 제16권, 제2호, 2014.12.
- [21] 이경렬·이종하, 국제마약사범에 대한 특수수사방법연구, p.301,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4. 12.
- [22] 심희기, 세관직원의 국제우편물 개봉·시료채취와 수사기관의 통제배달, p.67, 비교형사법연구 제16권 제2호, 2014. 12.
- [23] 신의기의 5인, 마약 및 조직범죄의 형사정책적 현안과 종합적 대응방안, p.285,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6. 12.
- [24] Gray T. Marx : Police:undercover Tactics, in: Encyclopedia of Crime and Justice, vol.

- 3, p.1156-1157.
- [25] 도중진, 조직범죄의 유형변화와 대처방안, p.106,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4. 2.
 - [26] 신의기, 마약류규제를 위한 국제협력체제 구축방안, p.208,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4.
 - [27] 중국형사법, 법무부 형사법제과, p.126-130, 2008.
 - [28] 남선모, 마약류중독범죄의 확산방지를 위한 효과적 대책, p.41. 교정연구 제6호, 2014.
 - [29] 윤태영, 초국가적 위협 및 테러리즘 증가와 통합국경안보체계 구축:미국, 캐나다, 호주를 중심으로, 융합보안 논문지 제17권 제4호, p.76, 한국융합보안학회, 2017.10.

————— [저 자 소 개] —————



박 호 정 (Park Ho Jeong)

1990년 경찰대학교 행정학사
2004년 충남대학교 법학석사
2013년 충남대학교 법학박사
2014년 ~ 현재 건양대학교 국방경
찰행정학부(경찰행정 전공)교수
email : phj1041@hanmail.net